

#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964호

나.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찬성자 42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7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최근 치료목적의 의료관광보다 광의의 개념인 웰니스 관광이 급부상 중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서울시도 서울만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형 웰니스 관광 확대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웰니스 관광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웰니스 관광 정책 발굴, 웰니스 관광 지정과 취소,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 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음.

##### 나. 추진현황 및 필요성

###### 1) 추진 현황

-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의 합성어로 일상 속에서 보다 나은 정신·육체적 상태 제고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웰니스 관광도시를 공모하고, 관광 상품 개발, 홍보·상품화, 기반조성, 웰니스 관광 페스타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의료·웰니스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2023.2.)에 따라 의료 관광 정책과 웰니스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웰니스관광 페스타’ 사업 예산(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웰니스 관광 사업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음.

- 또한 웰니스 관광의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2) 제정의 필요성

-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상품 개발 사업, 관광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7조는 시장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웰니스 관광과 유사한 의료관광은 건강을 ‘질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여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웰니스관광은 ‘몸·마음(정신)의 내외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건강으로 보아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sup>1)</sup>가 있음.
- 이처럼 웰니스 관광은 산업저변 확대나 관광수요 대상이 넓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관광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웰니스 관광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입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1) 김병현, ‘웰니스 관광의 개념과 활성화 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진흥연구 제4권 1호, 2016년 12월 31일, 117면

## 다. 조문별 검토

### 1) 용어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 을 웰빙, 건강 또는 행복을 의미하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 없고, 경기, 제주, 보령, 완도와 같은 타 지자체의 경우 ‘웰빙과 건강 또는 행복과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웰니스 관광” 정의 사용례 >

제정안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b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
타 지자체 조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b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배현진 의원)	(원안)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상임위 수정의견)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
정부 용어 사용례	거주지를 벗어나 관광자원에 기반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과 회복을 얻는 여행(문화체육관광부, 2023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 추진안, 2022.12)

## 2) 사업 추진과 지원사항(안 제5조)

-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제고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서 규정한 추진대상 사업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3) 웰니스 관광 지정 등(안 제6조)

- 제정안은 시장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서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시설로 지정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기준과 절차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4)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웰니스 정책수립, 웰니스 관광지정,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와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관광 관련 각종 위원회와 운영 목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5) 사업의 위탁(안 제9조)

-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 라. 종합의견

- 정부는 2018년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선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국형 웰니스 관광 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음.

- 또한 최근에는 국민들의 마음에 ‘치유와 행복’ 을 주는 가치 「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 구축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음.
- 서울시도 웰니스 관광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관광의 새로운 매력요소를 개발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집행부 검토의견**의안번호  
964**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환 의원	2023.7.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웰니스 관광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만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 확대 필요</li> </ul>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 마련 관련 규정</li> <li>○ 웰니스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규정</li> <li>○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취소 기준·절차 및 운영 등 규정</li> <li>○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관련 사항 규정 등</li> </ul>				
추진경과	○ '23.7.27. 의원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p>〈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국회 상임위 계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의일시 : '23.3.13.</li> <li>- 발 의 자 : 배현진, 김미애, 장제원 등 10인</li> <li>-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li> </ul> </li> </ul> <p>※ 현재 웰니스 관련 상위법(기본법) 없는 상황임</p>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내용이 유사·동일한 타 지자체 조례가 기 시행중에 있어 상임위 처리에 협조</li> </ul> <p>※ 제주도('21.5월), 경기도('23.3월), 보령시('23.3월) 기 제정·시행</p>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팀장	박정욱(☎2133-2781)	담당	이두영(☎2133-2783)